

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(최만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7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2. 9. 28

발 의 자 : 최만식·윤창근·김용

정종삼·김선임·지관근

마선식·김해숙(이상 8명)

1. 제안이유

- 연간 회의총일수를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,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일수를 15일 이내로 운영토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운행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연간 회의총일수를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연장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(안 제2조)
- 제1차 정례회는 15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, 임시회는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운영토록 개정함(안 제3조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
성남시 조례 제 호

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 제2호 중 “20일”을 “15일”로 한다.

다만, 제1차 정례회는 15일 이내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회의총일수) (생략) (신 설)	제2조(회의총일수) (현행과 같음) 다만,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제3조(회기) (생략) 1. (생략) (신 설) 2. 임시회의 회기는 <u>20일</u> 이내로 한다.	제3조(회기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다만, 제1차 정례회는 15일 이내로 한다. 2. ----- <u>15일</u> -----.

【관계법령 발췌】

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, 제45조, 제47조

제44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5조(임시회)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7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